

-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- IR 자료제작 및 투자유치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혁신적 기술력을 보유한 성장사다리 기업의 투자 유치 실현을 위해 「IR 자료제작 및 투자유치 지원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도약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7월 28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사업 목적

-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과 투자기관 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투자유치 실현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

2 모집 개요

- 모집규모 : 6개사 내외
- 지원대상 : 23~25년 지정 도약기업
- 지원내용 : 맞춤형 컨설팅 지원 (투자유치 및 스피치), IR자료 제작 지원

연번	지원항목	내용	비고
1	투자유치 컨설팅	기업가치 분석, 대·내외 환경 분석, IR 전략수립, 투자자 대응전략 등 전문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	3회
2	스피치 컨설팅	스토리라인 구축, 보이스 트레이닝, 언어습관 교정, 비즈니스 매너 수립 등 스피치 컨설팅 지원	3회
3	IR 자료제작 지원	15~20쪽 내외 IR 자료제작 비용 지원 (국문/외국어 택1)	디자인 포함

□ 추진일정 ※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구 분	일 정	비 고
① 참여업체 모집	07. 14.(월) ~ 08. 01.(금), <3주간>	선착순
② 맞춤 컨설팅 지원		
컨설턴트 매칭	08. 04.(월) ~ 08. 08.(금), <1주간>	2track
컨설팅 수행	08. 11.(월) ~ 09. 05.(금), <4주간>	
③ IR 자료제작 지원	08. 11.(월) ~ 09. 05.(금), <4주간>	

3 세부 추진 일정

1. 모집 공고 및 접수

- 주요내용 : IR 자료제작 및 투자유치 지원 참여기업 모집
- 모집일정 : 2025. 7. 14.(월) ~ 8. 1.(금) <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마감 가능>
- 모집대상 : 23~25년 지정 도약기업 6개사 내외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- ※ www.jblc.or.kr (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)

2. 컨설턴트-기업 매칭

- 주요내용 : 컨설턴트 - 기업 매칭
 - 투자유치 컨설팅, 스피치 컨설팅 2track 운영
 - 각 업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
- 추진일정 : 2025. 8. 4.(월) ~ 8. 8.(금)

3. 투자유치 컨설팅

- 주요내용 : 기업가치 분석, 대·내외 환경 분석, IR 전략 수립, 투자자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- 추진일정 : 2025. 8. 11.(월) ~ 9. 5.(금)
- 장 소 : 투자기업, 참여기업 사무실 등

4. 스피치 컨설팅

- 주요내용 : 스토리라인 구축, 보이스 트레이닝, 언어습관 교정, 비즈니스 매너 수립 등 스피치 컨설팅 지원
- 추진일정 : 2025. 8. 11.(월) ~ 9. 5.(금)
- 장 소 : 컨설턴트(강사), 참여기업 사무실 등

5. IR 자료제작 지원

- 주요내용
 - 컨설팅 포인트 기반 IR 자료제작 비용 지원 <최대 200만원>
 - 기업이 희망하는 제작업체 선정하여 운영
 - ※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
- 추진일정 : 2025. 8. 11.(월) ~ 9. 5.(금)

6. <연계> IR 피칭대회 참가 지원

- 주요내용
 - 벤처 캐피탈(VC) 소속 투자심사역 대상으로 기업 비즈니스 전략 발표
 - 투자자와 기업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지원
- 추진일정 : 2025. 9월 중

4 신청 및 접수

- 모집기간 : 2025. 7. 14.(월) ~ 2025. 8. 1.(금) 18:00까지
 - ※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가능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 - ※ www.jblc.or.kr (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)
- 문의전화 : 기업성장팀 (063) 711-2035, 2148
- 제출서류
 - [서식1호] 지원사업 신청서
 - [서식2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및 참여 협약서

5 선정 제외 대상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. 끝.